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2.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8. 9. 이수진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4. 8. 12.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2024.11.14.)

상정

-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21.)

상정, 의결(대안반영 폐기)

-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5.1.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수진 의원)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시에도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여건 및 처우 등 근무환

경 및 복지 등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이라는 현행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수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보수의 현황 파악과 적정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대안의 제시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폭언·폭력·성희롱 등의 예방이나 교대근무·야간근무하는 인력의 건강권 보호 등에 관하여는 명시하고 있는 반면,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 보호,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 등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보건의료현장에는 방사선 의료기기를 이용한 작업 등 임신·출산 기능에 대한 위험인자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여성 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책이 필요하며,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이 적절히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또는 이직하는 보건의료인력이 매년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숙련된 보건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이어져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사항에 보건의료인력의 보수 및 적정 보수수준을 추가하고, 보건의료인력등의 모성보호,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안정과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보건의료현

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 이지민)

□ 개정안은 종합계획 수립 사항에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보수 수준”을 추가하고 실태조사 사항에 “보건의료인력등의 보수”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근무여건의 핵심 조건인 보수 수준의 실태를 파악하고 적정 보수 수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종합계획에 “적정 보수 수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경우 특정 직역의 보수 수준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민간 분야의 근로계약 체결시 사적자치의 원리를 사실상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바, 개별 사업장의 임금 수준에 대한 공적 관여의 필요성 및 정당성 등에 관한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또한, 모든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를 위하여 현행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이미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의 사용 금지, 시간외근로·야간근

로·휴일근로 금지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들어 별도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적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으나, 보건의료분야의 근로 여건상 특성을 반영하고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임신·출산 기능 관련 유해·위험 환경 노출 방지를 위한 보호지침 마련 및 준수 의무를 부여하며 모성 보호에 대한 입법의지를 보다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조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강선우 의원)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심사결과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